

부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6165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김경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주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1661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원고는 2023. 2. 22. 설립되어 부산진구청장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포괄 승계하였는바,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및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H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 및 이에 따라 2017. 6. 14. H에 지급한 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에 따른 피고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임에도, 피고는 H에 위 돈을 송금한 후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10, 12,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원고로부터 상환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법원의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의 홍보관에 필요한 판촉물과 광고물 제작, 버스광고, 신문광고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광고대행업무인 점,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 제5조의 문언상 피고의 업무 범위에 분량을 위한 홍보 업무나 광고대행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H에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상환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도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는 2017. 6. 14. H에 1억 4,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H이 피고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광고대행료 잔액을 회수한 시점은 2019. 6. 11.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수령한 2019. 6. 3. 이후인바, 피고는 2019. 6. 3.까지 H에 지급한 돈이 9,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19. 6. 3. 1억 4,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적어도 차액인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의 내용과 피고의 업무 범위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수임인인 피고에게는 민법 제687조에 따른 비용선급청구권이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의 선급을 구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상환받기고”를 “상환받기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신, 판사 유현영, 판사 서호원